

입 법 예 고

강릉시 공고 제2024-932호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강릉시장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날씨 및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놀이터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내 영유아 및 보호자들의 욕구에 대응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설치 및 운영 (안 제3조)
- 다.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10조)
- 라. 안전관리(안 제11조)
- 마. 위탁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 아동보육과(담당자: 김상기, 전화: 033-640-5747, 팩스: 033-640-47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우)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아동보육과
- E-mail: gfyellow@korea.kr

붙임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영유아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3.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영유아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이 경우 성인 인솔자와 반드시 함께 입장)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어린이날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예약제로 한다.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 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놀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성실히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시장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놀이터 이용료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대 상	이용기준	이 용 료	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영유아	1회	2,000원	· 1명당 이용금액 · 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영유아 1인당 보호자 1인 입장
	보호자	1회	무료	

○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해야 한다.

[별표 2]

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전액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4.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대상 자녀 5.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부모 및 아동)가 있는 가정의 대상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의 대상 자녀 7. 시장이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련 증명서 지참
50% 감면	아동 10명 이상 단체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제9조(공공형 실내놀이터 내 행위의 제한) •제10조(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배상 책임)	2. 구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강릉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 강릉시 아동보육과 보육담당 황재영 ○ 강릉시 아동보육과 주무관 김상기					
4. 근거 법령명 등	-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				관 련 규 제 수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6. 규제존속 기한	규제 조항 개정 시까지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9조(공공형 실내놀이터 내 행위의 제한) 「유형 3호: 금지」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배상책임) 「유형 2호 명령」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규제사무명: 제9조(공공형 실내놀이터 내 행위의 제한)	
제10조(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배상책임)	
항 목	분 석 내 용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에 있어 이용객들의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존을 위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대중 이용시설로 해당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다수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며, 시설물에 대한 관리 또한 안정적으로 도모가능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본규제 중복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규제내용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이용자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였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배치로 별도 기구 및 인력 필요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 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 법규명 :
- ☐ 성명(단체명)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